#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전임교원연구년운영지침

제정 2008.02.01.
개정 2019.1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3조(선정기준) 제1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추천) 학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연구년 활용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1. 연구년 선정을 위한 서울대학교 제 규정과 그 상위 법령상의 적격 여부
2.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의견

제3조(신청 기간) 연구년은 당해 교원이 6개 정규학기 동안 강의한 경우에는 1개 학기 (6개월)간, 12개 정규학기 동안 강의한 경우에는 2개 학기(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청 기간별 교육 및 연구 실적 요건) ① 연구년 활용 신청 시 신청 기간별로 갖추어야할 교육 및 연구 실적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충족하고 또한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이 1개 학기(6개월)인 경우에는 신청마감월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직전 연구년 종료 후(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후) 정규학기 동안 책임시간 누적미달 시간이 3시간 이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명으로 발표된 300점 이상의 국제적수준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한다.
2. 신청 기간이 2개 학기(1년)인 경우에는 신청마감월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직전 연구년 종료 후(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후) 정규학기 동안 책임시간 누적미달 시간이 6시간 이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명으로 발표된 600점 이상의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적물이 있어야 한다.

②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추천여부를 정하도록 한다.

제5조(연구실적물 인정 기간) 직전 연구년 종료 후(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후) 재직기간 중 출판된 연구실적물 또는 게재 허가된 논문에 한한다.

제6조(국제적 수준의 연구실적물) SCI, SCIE, SSCI 및 A&HCI 등재 학술지의 게재 논문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전임교수(신규,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 임용세칙” 별표1에서 정한 각 전공별 해당 연구실적물 및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저서를 말한다.

부칙(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년 2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수에 한하여 1회의 연구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

부칙(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